

일본, 미국의 Minebea社가 소송을 철회하고 일본전산社와 화해

미국의 Minebea사와 일본전산사이의 HDD 기술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해 서로 화해함.

일 본전산은 하드 디스크(HDD)에 이용하는 유체 동압 베어링 모터 기술의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의 Minebea가 일본과 미국에서 제소한 2건의 소송에 대해, 미네베아가 양소송을 철회하여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양 회사가 화해까지의 경위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모터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향후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교섭한다고 하였으며, 양 회사의 사이에 지적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네베아는 금년 3월, 일본전산이 「HDD용 모터의 특허를 미네베아가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부당하다고 하여 일본전산제 모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또 7월에는 일본전산이 보유하고 있는 모터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미국의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미네베아는 화해 조건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양 회사의 결정으로 현단계에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일본, 소위 ‘2화면휴대특허’ 분쟁 계속될 전망

A DC테크놀로지社는 메인액정화면 이외에 리어(背面)액정화면 등 액정화면을 탑재하여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휴대폰에 관한 특허 소위 “2화면특허”에 관하여, 일본특허청이 내린 특허취소에 불복하여 동경고등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소위 “2화면특허” 문제란 2003년 5월에 등록

를 취득한 ADC사가 휴대폰사업자(NTTドコモ)와 단말기제조사(NEC)에 대하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과 부당이익반환을 추구하고 경고문을 송부했던 일련의 문제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NTTドコモ와 NEC 2개사는 ADC사를 피고로 하고, 2화면특허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SanDisk, 특허 문제로 STMicroelectronics를 제소

NAND 플래쉬 메모리 칩의 특허를 둘러싸고, SanDisk가 STMicroelectronics를 제소함.

플래쉬 메모리 메이커 SanDisk는 지난 10월 18일, 특허 문제를 둘러싸고 STMicroelectronics를 미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함과 동시에, ST에 의한 미국내에서의 NAND 칩 판매 금지를 명하도록 미국재무역위원회(ITC)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SanDisk는 ITC에 대한 신청에서 ST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NAND 플래쉬 메모리 칩이 SanDisk의 5,172,338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ST에 의한 미국내에서의 NAND 칩 판매 금지를 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에 제기되어, SanDisk가 보유하는 특허 문제 외에 「SanDisk 제품은 ST가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14건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특허는 무효」라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SanDisk의 지식재산권 담당 최고책임자 톰슨씨는 「ITC는 1997년 당사가 Samsung Electronics에 대해 취한 조치 중에서 당사의 5,172,338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동은 당사가 지식재산권의 존중을 보증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코멘트하고 있다.

ADC사가 가지지 않는다면 동경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구두변론의 진행 중에 일본 특허청이 동 특허의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ADC사는 구두변론 기간중에 주장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동경지방법원에서의 소송은 2004년 9월 16일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ADC사는 현재, 일본 특허청이 내린 특허취소

에 불복하여 동경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 회사 사장인 足立 勉씨에 의하면 금후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이 인정되고, 다시 특허를 갖게 되면, 계속해서 NTT 그룹과 NEC의 2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을 요구하며 다툴 것이라고 했다.

제공: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별록 2004/11